

- 2) 인도주의적 개입의 의미와 대표적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러한 개입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을 설명하여 보시오.
- 3) R2P에 대하여 그 의미, 5가지 전제조건, 4가지 적용범위, 3가지 기동 접근방식, 대표적 사례들에 대하여 설명하여 보시오.
- 4) R2P에 대한 비판론의 내용을 설명하여 보시오.

1. 국제개입의 일반적 이해

1) 개입에 대한 정의

- 광의 : 어떠한 주권국가의 국내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행위
- 협의 : 다른 주권국가의 국내적 사건에 무력적으로 개입하는 행위
- 개입수준의 스펙트럼
 - 연설 : 1990년 미 부시대통령은 연설로 이라크 국민으로 하여금 후세인 축출 호소
 - 방송 : 1980년대 미정부는 쿠바의 카스트로를 반대하는 메시지 방송 위해 Radio Marti 운영
 - 경제적 원조 : 냉전시 미국의 엘살바도로, 소련의 쿠바에 대한 경제적 지원, 매수(bribe)와 같은 불법적 경제원조, 냉전시 미·소의 타국에 선거자금 지원
 - 군사자문가 : 군사고문의 제공, 소련과 쿠바의 니카라과에 대한 군사적 원조 및 고문 제공
 - 지원반대 : 경제제재, 전략물자 및 군수물자 등 지원 반대
 - 봉쇄 : 냉전시 미국의 대소 봉쇄
 - 제한된 군사적 행동 : 미국의 리비아에 대한 폭격, 소련의 남예멘 내전에 대한 파벌적 지원, 테러근절을 위한 미국의 수단,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순항미사일 공격
 - 군사적 침략
 - . 미국의 1965년 도미니카 공화국, 1983년 그레나다, 1989년 파나마 침공
 - . 소련의 1956년 헝가리,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 1979년 아프칸 침공
 - . 1979년 탄자니아의 우간다 침공,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1997년 르완다의 콩고에 대한 군사개입
 - . 1995년 미국 주도에 의한 아이티에 유엔 개입, 1990년대 리베리아와 시에라리온에의 서아프리카 국가 개입과 같은 다자적 개입

2) 주권

- 주권은 영토에 대한 절대적 지배 의미
- 주권은 베스트팔렌 체제의 결정적 개념
- 국제연맹, 국제연합 헌장에 의하여 더욱 강화

- 1981년 승리한 프랑스 사회당의 경제정책 변경의 한계
-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의해 러시아, 브라질 등의 통화, 경제정책 변경
- 주권 제한하는 요인은 다양 : 경제적 상호의존, 난민의 대량 유입 등
- 개입의 결과 중장기적으로 자치권 증대될 가능성도 존재

3) 개입에 대한 판단

○ 현실주의자

- 국제정치의 중요한 가치는 질서와 평화, 중요한 제도는 세력균형
- 미국의 1965년 도미니카 공화국 개입, 소련의 브레즈네프 독트린에 의한 동구권 개입
- 개입 통한 질서 유지, 세력균형의 달성, 회복에 대하여 수용하는 입장

○ 세계주의자

- 국제정치의 중요한 가치는 정의이며, 중요한 제도는 개인들의 사회
- 개입이 정의를 진전시키는 '선(good)'을 위한 것은 정당화될 수 있음
- 무엇보다 선한 개입인가에 대한 논란의 대두
 - . 자유주의적 세계주의자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종분리정책(apartheid)에 대한 개입은 정당
 - . 보수주의적 세계주의자 : 미국의 니카라과 좌익정부, 앙골라와 모잠비크의 공산정부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정당
 - . 1992년 소말리아 기아 종식 위한 개입, 1994년 아이티 민주적 당선자 복원 개입, 1995년 보스니아 내전 및 1999년 코소보 내전에 개입하여 '인종 청소(ethnic cleansing)' 중단은 정당

○ 국가도덕주의자

- 국제정치의 주요가치는 국가와 국민의 자치권, 주요제도는 일정한 규칙과 국제법을 가진 국가들의 사회
- 개입이 정당화될 여지가 없으며, 전쟁은 영토 존엄성, 외부 침략에 대항으로 자주권 방어 위해 정당화

4) 규칙의 네 가지 예외들 : Micheal Walzer, 『Just and Unjust Wars』(1977)

○ 선제개입(preemptive intervention or war)

- 국가의 영토적 존엄성과 정치적 주권에 대한 명백하고 충분한 위협이 있을 경우 즉각 행동 가능
- 선제전쟁(preemptive war) : 1967년 이스라엘의 이집트에 대한 공격
- 예방전쟁(preventive war) : 1914년 독일 참모본부의 제1차 세계대전 시작 (슐리펜계획 지연시 장차 러시아가 더욱 강대화할 가능성 염려)

○ 반대개입(counterintervention)

- 어떠한 개입에 대하여 이를 무효화하여 균형을 맞추려는 것

- 미국의 베트남 개입의 명분 논리
- 1979년 중국의 베트남 침공은 캄보디아에 대한 베트남 침공에 대응 주장
- 반대개입은 기존 개입에 상응하는 정도로만 허용
- **대량학살(massacre)/집단학살(genocide)** 위협받는 국민 탈출 도움이 필요시
탄자니아의 우간다 독재체제에 대한 공격
 -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
 - 그러나 대량학살이 반드시 타국가나 국제사회의 개입을 가져오는 것은 아님
: 1994년 르완다, 1992년 & 1995년의 보스니아, 1996년의 라이베리아, 1999년의 시에라리온에 대한 미국의 개입 주저
- **분리운동(secessionist movement)**을 지원할 권리
 - 분리주의자들의 국가건설과 자치권 발전도와야 하는 경우
 - 그러나 어떠한 분리주의자들을 도와야 하는가의 논란 대두

5) 국제개입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동기, 방법, 결과

- 개입을 정당화하는 동기가 있었는가
 - 남베트남을 구하려는 미국의 베트남전 참여
- 정의로운 동기라도 그 수단이 정당하였는가?
 - 개입이 최후의 바람직한 수단이었던가에 대한 논란 대두 가능
 - 트루만 독트린과 케년의 봉쇄노선의 차이 논란
 - 트루만 독트린에 의한 과대한 야망과 불행한 결과 초래
- 개입이 결과적으로 바람직한 성과를 내었는가
 - 베트남전에서의 패배, 많은 인명 살상

2. 인도주의적 개입

1) 인도주의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

- 어떤 국가에서 그 나라 국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너무나 잔혹하고 대규모적 이라서 국제공동체의 양심을 경악하게 하는 정도의 경우
-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한 국가나 여러 국가들이 연합하여 합법적으로 개입하여 필요시 무력까지 행사하는 것을 의미
- 전쟁을 수반하는 경우 인도주의적 전쟁 또는 인도주의적 폭격이라고 불리움
- 인도주의적 개입은 과거에 상당히 오용되어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침입하거나 점령하는 구실로 이용되기도 함.

2) 인도주의적 개입 옹호론과 반대론

○ 옹호론

i) 법률상의 논거 : 반(反)제한주의(counter-resrictionist)

- 국제연합 헌장 : 모든 국가는 인권 보호의 의무, 인권의 보장은 평화와 안보의 유지만큼이나 중요한 위치 차지, 헌장 1(3)조는 인권보호를 국제연합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도주의적 개입은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연합 헌장 규정의 제한으로부터 면책, 헌장 2(4)조에 의해 무력사용은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불가침성이 침해되는 경우에 금지된다면서 인도주의적 개입은 두 가지 모두 침해하지 않아 헌장의 위반 아님
- 국제연합 헌장 내에 법적 근거 없더라도 국제관습법상 허용 : 인도주의적 개입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국제연합 헌장에 선행(예: 1827년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그리스에 개입, 1898년 미국이 쿠바에 개입, 1991년 영국과 프랑스가 이라크에서 안전한 피신처 설치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관습법에 호소, 1994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르완다의 집단학살 중단시키기 위한 일방적 개입의 정당성 주장 등)

ii) 도덕적 근거 : 집단학살 위험에서 민간인 보호 위한 개입은 도덕적 의무

- 주권은 자국민 보호에 대한 책임에서 나오며, 이에 실패한 국가는 주권적 권리 상실
- 사람들은 공통된 인간성(common humanity) 개념을 통해 인권을 가지며, 다른 다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지켜야 할 의무
- 지구화된 세계에서 한 곳에서의 인권 위반이 다른 곳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개입할 의무
- 일부 정전론(just war) 지지자들은 도움 요청하는 이들에 대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라고 주장

○ 반대론 : 다양한 이론적 시각에서 반대 논리 존재

- i) 국제법에 인도주의적 개입 근거가 부존재 : 국제연합이 승인하지 않은 어떠한 무력사용도 금지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 가능
- ii) 국가는 인도주의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여 개입하지 않음 : 복잡한 이유에서 개입을 시도하며, 개입 대상국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 아닐 수도 있음
- iii) 국가는 타국민 구하기 위해 자국 병사 생명 위태롭게 하면 안됨 : 정치지도자는 타국민 위해 자국민 희생시킬 도덕적 권리 없음
- iv) 남용의 문제 : 자국의 이익 추구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화(예: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 침공 시 그 지역 독일계 주민의 '자유와 안전' 보장을 명분으로 함)
- v) 대응의 선별성 : 선별적인 개입에 의한 정책의 비일관성, 더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미흡하거나 지연된 대응 등(예: NATO의 경우 르완다 사태에 늦게 미흡한 개입, 코소보 사태에는 적극 개입)

vi) 개입의 도덕적 원칙에 대한 합의 곤란 : 합의 부재 상황 하에서 강대국이 자국의 문화적 기준, 도덕적 가치를 약소국에 강요 가능성

2) 인도주의적 개입 사례

- 1964년 유엔의 콩고 개입
- 1965년 유엔의 도미니카 공화국 개입
- 1978년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 1979년 우간다-탄자니아 전쟁
- 1991년 오퍼레이션 프로바이드 컴포트 (미국의 이라크 개입)
- 1994년 오퍼레이션 업홀드 데모크라시 (미국의 아이티 개입)
- 1994년 UNAMIR (르완다)
- 1999년 나토의 유고슬라비아(세르비아) 공습 : 코소보 사태
- 2011년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3. 보호책임(R2P : Responsibility to Protect)

1) 보호책임의 등장

- R2P 용어가 국제사회에서 처음으로 입에 오르내린 것은 2001년 ‘개입과 국가 주권에 관한 국제위원회(ICISS)’라는 독립적 모임
 -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 1999년 NATO가 유엔 안보리의 승인없이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코소보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 이후, 개입과 국가주권의 관계에 대해 논의
- “어떤 한 국가에서 인종청소를 비롯한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저질러지고 있다면, 국제사회가 인권 보호를 위해 군사적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논리 전개

2) R2P의 6가지 전제조건 (2001년 ICISS 보고서)

- i) **정당한 명분** : 인간안보에 대한 명확한 위협의 존재
- ii) **정당한 의도(right intention)** : 다른 의도가 아닌 인간안보의 보호를 위한 개입
- iii) **마지막 호소(last resort)** : 다른 모든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뒤의 마지막 호소
- iv) **비례적 수단(proportional means)** : 군사개입의 규모나 기간의 정도는 상황에 적합한 정도로 한정
- v) **합리적 전망(reasonable prospects)** : 군사개입을 통해 인간안보를 확보할 가능성에 대한 전망
- vi) **정당한 권위(right authority)** : 유엔 안보리의 개입 결의안 같은 정당한 권위와 따른 군사개입의 정당한 주체

3) R2P의 3가지 이행단계

- i) Prevent(예방) : 제반 인재를 방지하며 조기경보체제를 확립할 예방의 책임
- ii) React(대응) : 경제적 제재로부터 군사적 간섭에 이르는 대응의 책임
- iii) Rebuild(재건) : 지속적 평화구축을 위한 재건의 책임

4) R2P의 4가지 적용범위 (코피 아난의 UN, “보다 큰 자유 안에서(In Larger Freedom)”, 2005년)

- i) 반인륜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 ii) 대량학살(genocide)
- iii) 전쟁범죄(war crimes)
- iv) 인종청소(ethnic cleansing)

5) R2P의 3가지 기동 접근방식(UN, "R2P 이행", 2009년) : 3가지의 원칙

- i) 제1기동 : 반인륜적 범죄, 대량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국가가 1차적 책임, 주권적 책임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제법적 의무에 기인
- ii) 제2기동 : 국가가 스스로 보호책임을 완수하도록 원조하고 고무할 국제공동체의 책임
- iii) 제3기동 : 외교적, 인도주의적, 기타 평화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하는 것이 부족할 경우, 국제연합 헌장 제7조 규정에 따라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국제공동체의 책임

6) UN과 R2P

-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 결의문 138절, 139절에서 보호책임을 명시
- 2006년 유엔 안보리 결의 1674호(S/RES/1674)는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명시한 보호책임을 재확인
- 2009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보호책임과 관련, “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보호책임 이행) 제목의 보고서를 유엔 총회에 제출
- 반기문 사무총장의 보고서는 보호책임에 대한 유엔 총회에서의 최초의 토론을 불러일으켰으며, 94개국이 이에 대해 발언하였고, 대부분이 보호책임에 대하여 동의
 - 이에 보호책임에 대한 최초 유엔총회 결의안(A/RES/63/308) 도출

7) R2P의 적용 사례

- Kenya 2007/2008 : 2007년 12월 선거의 부정 논란을 둘러싼 종족 간, 인종 간 폭력으로 1,500여 명 사망, 30만 명 난민의 폭력사태 발생하자, 유엔의 코피 아난 사무총장은 대통령과 야당지도자의 권력 공유 협정 맺도록 유도

- Libya 2011 : 리비아 정부에 의한 민간인 공격 사태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는 비행금지구역 설치, 무기금수조치, 그리고 개입 관련 최초로 무력 사용을 결의
- Cote d'Ivoire 2011 : 선거후 폭력 사태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당선자를 선언하고, 민간인 보호를 위해 무력 사용을 승인
- Central African Republic (CAR) 2013 : 반군에 의한 폭력 사태 속에서, 유엔은 평화유지군에게 보호책임 차원에서 민간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력 사용을 허용
- Syria 2014 : 내전에 의한 민간인 사망, 대량난민, 대량 이주 등의 시리아 사태와 관련하여, 유엔 안보리는 보호책임 차원에서 시리아 정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시리아에 제공할 것을 결정

8) R2P에 대한 비판

- 국가의 주권원칙에 위협 : 보호책임 근거로 유엔이나 강대국이 수많은 국내문제에 개입 시 국가의 주권 약화 가능성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른 선택적 개입 가능성 : 비토권에 따른 보호책임 결정권이 있는 강대국들이 군사개입 최종 결정
 - 보호책임에 따라 보호해야 할 시민의 범주에 대한 논란 : 내전 상황 하에서 합법적 정부에 대항하는 반군세력 보호 필요성 등 논란
 - 보호책임에 따른 군사개입의 정도가 모호 : Libya 사태 개입의 경우 인간안보 보호 목적 외에 정권교체 의도 작용하였다는 비판 제기
 - 구조적 문제 : 강제력 사용 경우 정당성 약화, 강제력 미사용 경우 효율성 약화
- cf) '보호 중의 책임' : 2011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브라질의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제안한 개념
- 잔악행위 예방과 위기의 초기단계에 평화적 수단 동원 필요
 - 유엔 안보리로부터 위임을 받아 행동하는 국가는 안보리에 책임
 - 무력사용 결정의 신중한 판단을 위한 기준의 필요성 주장
 - 무력사용에 관한 결정 이전에 다양한 정책의 가능한 결과에 대해 현명한 분석의 더 많을 필요성 제기
- > 보호책임에 따른 개입을 위한 무력사용 관련 합의 촉구하는 내용이었으나, 적시의 결정적 대응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비판도 받음